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12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 곽규택·정성국·조배숙

서지영 · 조승환 · 김대식

송석준 • 이헌승 • 이성권

진종오 · 조경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은 항만구역 뿐만 아니라 항만과 인접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당 항만구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이 중요함에도 사업계획 수립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항만 주변지역 사정을 고려한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에 따라 국가관리항만을 제외한 지방관리항만에 대해서만 관할 시·도지사에 게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권을 이양하는 개정 법률이 2025년 5월 1 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또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반면, 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 한 소음,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이 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리항만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도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제1항제4호 신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관리무역항 또는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사업계획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 내의 지역(사업구역과 연접한 지역만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당
 - 가. 기반시설 설치: 도로, 철도, 광장, 공원 등 교통·공간시설 설 치사업
 - 나. 주민복지사업: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설치 등 주민편의증진 및 문화·체육사업
 - 다. 소득증대사업: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사업 지원, 창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사업

라.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주민 건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
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	립) ①
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	
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	
다. <u><단서 신설></u>	<u>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국</u>
	가관리무역항 또는 국가관리연
	안항에 관한 사업계획 중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
	영한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로 하여금 사업계획
	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
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	
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	
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 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5km 이내의 지역(사업구역과 연접한 지역만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당 가. 기반시설 설치: 도로, 철 도, 광장, 공원 등 교통・ 공간시설 설치사업 나. 주민복지사업: 노인복지 시설, 도서관, 문화·체육 센터 설치 등 주민편의증 진 및 문화ㆍ체육사업 다. 소득증대사업: 지역일자 리 창출, 지역특화사업 지 원, 창업 및 소상공인 육 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사 업

라.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주민 건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모든 사업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